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제공일 : 2012. 4. 1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 장 : 강 인 구

사무관 : 장 묘 인

전 화 : 500-2355

쪽 수 : 5P

별첨자료 : 있음(14P)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4월 1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규제개선으로 新수산 바람 일으킨다 !

- 젊은 인력에 신규 어업 면허·허가 기회 우선 제공 -

〈 주 요 내 용 〉

◇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이 용이하도록 어업제도를 개선

- 양식어업은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어업권이 부여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 어선어업은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 관행화된 허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산업 활성화를 유도

□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던 어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 될 전망이다.

- 수산자원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업 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 허가 등)을 부여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해 왔다.

○ 그러나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추세로 기존 어업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인력이 수산분야에 진입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수산물 소비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수산업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용이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어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먼저, 양식어업의 경우 지난 연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양식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인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

○ 그동안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하여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을 허용해 주고 있어 면허를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차단되는 등 비효율적 이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 양식면허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수산업법에서는 물권으로 인정하여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20년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허를 그동안의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급되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하여 젊은 인력들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어장환경 보호를 위하여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면허기간 내에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하여 퇴출시킬 계획이다.

• 현재 면허권자에게는 주기적인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재면허 가능

□ 또한, 초기 시설비 및 사육·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외해 양식장의 경우에는 현행 60ha 이하의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규모화 된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 양식면허 발급시 구체적으로 양식품목을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양식 어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양식장 경영에 있어 어업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제도는 기존의 관행화된 제도 개편을 통해 어업인 편익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 허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어선감척 중심의 연근해어업 정책기조로 인해 신규 어업허가 발급이 금지되면서 어업허가가 양식면허와 같이 특권화, 이권화 되면서 젊은 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난 60년간 사용해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 종이 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이 발전하면서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전자허가증이 도입되면 이로 인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전국 동시허가제도가 도입되면 5년마다 개별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허가 과정에서 방치어선 등 유힬허가를 정리할 수 있어 필요시 새로운 인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식어업과 마찬가지로 허가기간 내에 2회 이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습 불법 어업자는 재허가를 제한하고 자원남획, 어업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지정하여 어업허가를 조정하는 등 귀어자 등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1976년 어업별 상한 톤수를 설정한 이후 40여 년간 제한되어 있던 어선의 상한톤수를 상향 조정하여 어선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던 수산관계 법령상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함께 개선한다.

• 어선상한 톤수 : 근해어선(8톤이상 ~ 140톤 미만), 연안어선(8 ~ 10톤 미만)

□ 한편, 한반도 주변의 어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구역, 금어기 등 포획·채취 금지기준 등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 이번 어업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및 자본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어업분야 규제개선 방안

1 양식어업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양식면허는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양식면허는 물권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재산권을 부여

• 면허어장 현황('10) : 해조류 82천ha, 패류 50, 어류등 9, 마을어업 118, 정치망 7

○ 유효기간은 최대 20년, 해당어장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 재발급

- 경영실적, 불법어업 실적, 환경관리 실적 등 미 고려

□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에 따른 비효율적 이용의 관행화

○ 면허어업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보수화, 관료화되어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젊은 신규인력의 진입 불가

○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은 관리 의식 부족 등으로 불법으로 어촌계원이 아닌 개인에게 빈매(貧賣)하는 행위 성행

• 빈매 : 어장 이용·관리·채취권 등을 비 어촌계원 등에 일정 기간 매매
→ 매입자는 기간내 최대 수익 창출을 위해 자원남획 및 환경파괴

□ 생산량 증대에 집중, 과도한 연안 양식장 개발 및 밀식양식 등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어장이용 효율성 저하

2. 규제개선 방안

- ◆ 양식어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진입 및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을 유도
- ◆ 어장의 환경친화적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어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양식장 환경관리를 병행

① 양식업 진입대상 확대

- (현황) 해조류, 바닥식 패류양식 및 어류등 양식어업에 대기업 진입을 제한(수산업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 상시 근로자의 수 : 1천명이상 ○ 자산총액 :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 500억원 이상 ○ 연간 평균매출액 : 1,500억원 이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 (개선) 어류양식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장에 대기업 진입 허용
 - 대기업은 수출대상 어종 중 신규로 양식장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어종(참치, 능성어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입 검토
 - 해조류 양식 등 생계형 양식업 및 광어 등 양식생산 기반이 확립된 어종은 대기업 진입 제한 유지

② 양식장 면허 우선순위 정비

- (현황)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어업권자에게 관행적으로 재면허(수산업법 제13조)

- 면허어업 장기간 보유로 보수화, 관료화 되어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 불가
- 현재는 기존경영자, 과거 경험이 있는 자, 기술자 순
- (개선) 양식업의 우선순위를 기술,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은 후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장에 대해 면허를 우선 발급하는 방안 검토

③ 외해양식장 면적제한 규정 폐지

- (현황)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양식장 면적 60ha 이하로 제한(수산업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어촌계, 지구별수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개선) 외해양식장은 양식어장 규모 제한(60ha) 규정을 폐지하여 규모화 된 양식이 가능하도록 허용
 - 연안양식장은 현재도 밀집양식으로 어장환경이 황폐화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한 규정 유지
 - 외해양식이라도 어장환경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기준 준수 관리·감독 철저

④ 양식어종 자율선택제 도입

- (현황) 양식어업의 종류가 품종별로 세분화되어 어업여건 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경영 및 발전 저해
- (개선) 어업면허중에 구체적으로 지정된 양식품목을 삭제하여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
 -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관측은 강화

⑤ 불필요한 양식시설 기준 등 폐지

- (현황) 어장의 수심, 어장사이의 거리, 어장의 시설방법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제시
- (개선) 시설기준과 양식방법에 중복된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삭제하여 단순화

⑥ 신규 양식방법 추가 도입

- (현황) 기술개발로 새로운 품종 및 양식방법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 미비
- (개선) 신품종인 해삼, 전복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삼 축제식 양식 등 새로운 양식방법을 도입

⑦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

- (현황) 양식방법별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과도하게 제한
- (개선) 연승식 해조류 양식어장 구역 한계 확대(20ha 이하 제한 규정 폐지), 수평망식 굴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확대(10%→30) 등

⑧ 마을어장 양식 및 위탁관리 허용

- (현황) 마을어장 생산성 저하 및 어업권 행사범위 제약
 - 마을어업은 패류·해조류 등 자연산 수산물을 단순 포획·채취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용 및 생산성이 저하(수산업법 제8조)
 -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효율성 저하 및 불법 빈매 성행(수산업법 제33조)
- * 다만, 어촌계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또는 그 계원이나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가능

○ (개선) 마을어업에 양식어업 허용 및 어업권 행사범위 확대

- 마을어장 중 갯벌어업육성지구로 지정된 어장은 갯벌참굴, 해삼 등 새로운 소득품종의 양식을 허용
- 갯벌양식어업지구로 지정받은 마을어장은 어장소유 어업인이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및 장관지정 기관 등에 위탁관리 허용

⑨ 어촌계 가입절차 간소화

- (현황) 어촌계 가입시 가입하고자 하는 어촌계 계원의 동의서 첨부이 관례화 되어 어촌계 신규 진입을 제한
- (개선) 어촌계 가입시 조합원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첨부를 제한하도록 하여 어촌계 가입 절차를 간소화

⑩ 어촌계 임원제도 개선

- (현황) 직·간선제 방식의 어촌계 임원선출 및 임원 단임제로 인한 어촌계 운영 비효율성 발생
- (개선) 어촌계 임원 방식을 기존의 직·간선제 방법 외에 임명제, 추천제 등 다양화하고 임원의 연임제도 도입

⑪ 패류양식장 주변해역 어장관리 기준 강화

- (현황) 양식장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에 대한 관리미비로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 제기
 - * 한·미 패류위생약정 등에서 수출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 이행을 위한 위생관리 규제 강화 필요
- (개선)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패류양식어장 주변해역에서 화장실 설치 의무화 및 동물 사육 금지 행위제한 규정 강화

⑫ 어장환경관리 범위 확대

- (현황) 어장관리해역에 한해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정된 조사 지역·기간으로 체계적인 어장환경 관리 미흡
- (개선) 어장환경 조사시기(5년 주기 → 수시) 및 조사범위(어장관리해역 → 전어장) 확대, 어장환경 상시측정제도 도입 등
 - 어장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측정

⑬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 도입

- (현황) 어장 이용자의 주기적인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제조치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 의문
 - 현행은 어장관리의무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취소)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재면허 가능
- (개선)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어장관리 기준 등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면허재발급 불허 등 퇴출요건을 강화
 -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3회 이상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불허

⑭ 양식장 어장청소 주기 개선

- (현행) 어업면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장청소 주기를 3년으로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를 5년까지 연장 가능
- (개선) 양식방법 및 주변 어장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2~5년으로 세분화
 - 어류 양식 등 사료 사용이 많은 업종은 청소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해조류 양식 등은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2 자원관리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의 특성상 한번 고갈되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투입됨에 따라 다양한 관리 수단을 운영
 - '10년 전체 어업생산액(7조 4,257억원) 중 연근해가 3조 9,117억원으로 52.7% 차지
- 그동안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 → 한정된 자원량으로 인한 조업경쟁 발생 → 자원량 감소의 악순환
-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량 규제 등 어업관리와 종묘방류 등 자원관리를 병행
 - 제도적 규제 외에도 감척사업을 통한 어선세력 감소를 유도
 - 수산자원량 : ('80까지) 1,000만톤 → ('04) 767 → ('07) 812 → ('09) 831 → ('11) 860
- 최근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으로 자발적 자원관리 체계 기반 마련
-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
 -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자원관리 능력 등 질적 수준은 정체
 - ('01년) 63개소, 5천명 → ('11.12월) 932개소, 64천명
- 어업인의 자율적 자원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
- 그러나, 자원관리를 위한 중복 규제, 어업자원 생태변화를 고려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 미흡 등에 대한 지적도 존재
- 자원관리 분야는 어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접근 필요

2. 규제개선 방안

- ◆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위해 주요 수산자원 관리방식을 재검토하여 기준을 재설정
- ◆ 어업인의 자율적 자원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 ◆ 수산자원 훼손시 어업생산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

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지속 제기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해면 2,526km², 육지 369, 내수면 336

- (개선) 수산자원보호 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 측면을 고려,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

② 포획·채취 제한 기준 재조정

- (현황)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등 제한규정이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연근해 어장수온 상승 등 환경변화를 미반영

• 금어기 설정 : 어류 8종, 갑각류 7종, 패류 7종, 해조류 9종, 기타 2종 등

- (개선) 기존 금지규정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산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금지규정을 재조정

- 회복대상어종의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우선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타 품종으로 확대

• 회복대상 어종(15)

- 금지규정 설 정(7종) : 도루묵, 참홍어, 꽃게, 참조기, 대문어, 오분자기, 대구

- 금지규정 미설정(8종) : 고등어, 갯장어, 기름가자미, 옥돔, 말쥐치, 갈치, 낙지, 개조개

③ 어구·어법 제한규정 재조정

- (현황)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11.4.23)중에 있으나 일부업종 어구개선 건의

- 어업별 특성에 따른 변형어구 사용 등으로 불법요인 해소요구

- (개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업현실을 고려하여 그물코 크기, 어구사용량, 어구형태 등을 현실화

- 다만, 자원남획 및 업종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거리 조업 또는 업종간 자율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

④ '어업자협약'제도 활성화

- (현황)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으로 자발적인 자원관리 능력은 제고

-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두고 공동체간 다툼이 빈번한 문제 상존

- (개선) 공동체가 자발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체간 '어업자 협약제도' 체결을 유도

- 어업자협약 체결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는 공동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

- 동·서해어업관리단 분쟁조정 기능과 연계하여 현장 자체적인 관리를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 어구·어법 제한 등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 남획이 가속화
 - 어획 노력량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원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과잉어획능력이 투입되는 악순환
 - 어업허가 동결로 신규진입이 제한되었으나 어구수, 어로장비 현대화 등으로 실질적인 어획노력량은 지속 증가
- 어업허가의 물권적 권리화로 인한 진입 제한
 - 허가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여부 및 허가정수 등에 관계없이 재허가
 - 구조개편 장애, 어업분쟁 빈발 등 어업관리 제도 시행 저해
 - 특히, 업종간 또는 어업인간 집단 민원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 상존
- 경직적인 제도운영으로 해역 및 지역별 특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기능 미흡
 - 근해·연안 어업구역 미구분 등 정확한 기준 없이 규제만 양산하여 자원남획 및 조업구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
 - 허가정수는 조업구역별 자원상태 보다는 연근해 전체 자원을 대상으로 규정, 조업구역별 어업경영 불균형 초래

2. 규제개선 방안

- ◆ 관행화된 어업제도 개편을 통해 어업인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 및 건전한 어선어업 문화 정착
- ◆ 어업제도는 어업인의 안전·복지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이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점

① 어선톤수 제한규정 완화

- (현황) 어업별 어선톤수 제한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선원 거주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시설개선 애로
 - 연안 10톤 미만, 근해 140톤 미만으로 한정
- (개선) 업종별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상한톤수를 확대 설정
 - 어창규모 및 어구량 제한 등 톤수 완화로 인한 어획강도 강화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

② 업종간 조업구역 재조정

- (현황) 연근해어업 도입('53) 이후 일부 업종은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 구분되지 않아 일부 연안어업은 마찰 지속
 - 구분되지 않은 어업 : 오징어채낚기, 통발, 자망, 안강망, 연승어업 등
- (개선) 연안어업과 충돌되는 근해어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 조업구역을 분리하여 영세어업인을 보호

③ 어선등록 등 관련서류 제출 간소화

- (현황) 내부 확인이 가능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정정 신청서) 제출로 어업인 등의 불편 초래
- (개선) 어선등록관련 처분시 관련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민원인 행정 편의 제공
 -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 폐지, 어업허가 신청시 어선건조 허가서 첨부 폐지,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 등

④ 지자체 어업관리 자율성 확대

- (현황) 정부에서 일방적인 어업기준을 제시하는 등 경직된 어업 제도 운영으로 지역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
- (개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어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연근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
 - 정부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관리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지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⑤ 전자허가증제도 도입

- (현황) 지난 60년간 종이어업허가증을 사용, 조업현장에서의 훼손, 칼라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라 위·변조로 인한 허가관리 애로
- (개선) 종이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전면교체('12~'14) 하여 위·변조 사전 예방 및 어업허가 관리 효율화
 - 전자허가증에 입출항 신고 등 어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 전자허가증 예산 : ('12) 12억원 → ('13) 16 → ('14) 15

⑥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 (현황) 어선은 개인간 정보에 의존하여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어업경영에 적합한 어선 매입 애로
- (개선)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고 중고어선 제값 받기 실현
 - 단기적으로는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어선 공개거래 추진
 - 장기적으로는 어선리스, 어선펀드 등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어선을 관리하는 어선거래소 설립

⑦ 자원관리형 감척제도 도입

- (현행) 어업인들 희망에 따라 감척사업 대상을 선정, 어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고유가 등 어업경영 여건에 따라 변화
- (개선) 자원남획, 어획간 분쟁 등을 야기하는 어업에 대해 행정 기관 직권으로 감척할 수 있는 자원관리형 감척제도 도입
 - 조정된 어업허가는 귀어자 등에게 신규허가를 검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정('11.7 공포, '12.7 시행)으로 법적근거 마련

⑧ 전국 '동시허가제' 추진

- (현황)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행정처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기간내 허가 갱신을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 전국 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갱신(5년 주기)하여 개별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절감
 - 일제갱신시 방치어선 등 유휴허가를 정리하여 필요시 신규허가를 통해 인력 진입을 유도
 -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허가증 교체와 연계하여 어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

⑨ 상습불법 어업자 퇴출제도 도입

- (현황) 불법여부 등을 불문하고 허가기간 만료(5년)시 재허가 하는 등 상습 불법어업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어업구조
- 불법어업 등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1년 후 재허가 가능
- (개선)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허가 취소되거나 15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제한 등 퇴출 제도 도입

⑩ 유사 허가어업 통폐합

- (현황) 허가제도가 어획방법별, 규모별로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어업인 불편 및 허가관리 애로, 업종간 분쟁 발생 유인
* 연근해어업은 근해 21개, 연안 8개 등 총 41개 어업의 분류
- (개선) 어획방법별, 규모별로 세분화된 어업의 종류를 일부 통합하여 단순화
* 예)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 근해복합어업 등

⑪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재조정

- (현황) 지난 20년 가까이 감척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허가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척사업 추진
- (개선) 5년마다 어업자원량을 정밀 평가 후 적정허가 건수를 산출, 그에 맞는 허가처분 및 감척사업 추진

⑫ 수산관계법령 용어 순화

- (현황) 수산관계법령 용어가 한자식,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해에 한계
- (개선) 전문용어 200개를 선정하여 교과서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